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  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과장 김철욱(6536)/ E-mail: leokma0817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52-07795호

시행일자 2022. 10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(의료폐기물 담당자)

참 조

제 목 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결과 통보(2차) 및 향후 교육  
일정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: 가.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
나. 우리협회 대의협 제0652-14407호(2022.03.07)

3.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실시한 「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」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, 2022년 남은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했거나 교육을 미이수한 배출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교육 결과 보고(2차)

- 교육기간: 2022.03.21.(월) ~ 2022.09.30.(금)

- 교육 이수자: 898명(붙임참조)

지역(가나다순)	이수자(단위: 명)
강원	16
경기	265
경남	39
경북	26
광주	33
대구	62
대전	23

부산	52
서울	189
세종	5
울산	6
인천	38
전남	22
전북	49
제주	6
충남	24
충북	20
기타	23
<b>총 이수자</b>	<b>898</b>

나. 2022년 교육일정 안내

- 교육과정명 :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
- 교육일정 : 2022.03.21.(월) ~ 2022.12.26.(월)
  - ※ 2022.12.26.(월)까지 강의를 모두 듣고 [E-test]를 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됨.
  - ※ 교육기간이 지난 후 교육을 완료한 자는 미이수 처리됨.
- 교육 대상자
  -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병, 의원 등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
  -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(의료기관)
- 교육 수강 안내 :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
  - 교육사이트: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(<http://edu.kma.org>)

- 붙임 : 1. 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이수자 명단(898명) 1부.  
 2. 수강안내서 1부. 끝.

## 대한 의 사 협 회 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16개 시도지사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서울특별시, 세종특별자치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